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나20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2. 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0가단515463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7. 3. 11.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50,991,2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91,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주식회사 L,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조회회신결과 및 당심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페이지 7번째줄 ‘을 제1 내지 8호증’을 ‘을 제1 내지 10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 판사 이창열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상북도 구미시 대 883㎡

2. 건물

경상북도 구미시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정류장 및 변소 및 식당

1층 정류장 198㎡

1층 휴게음식점 24.75㎡

1층 일반음식점 24.75㎡

부속건물

1층 변소 19.5㎡

- 이 상 -